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사회공공성강화 ·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교육지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 02-2670-9120 | 2025년 6월 11일



■선거공보에 딱 1번 언급된 ‘노동’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이다. 3년여에 만에 정권을 재탈환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했다.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국민주권에 과연 노동은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 가늠자 첫 번째. 노사정이 합의하여 시행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이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합의’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로 대표되는 사용자측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동결’과 ‘삭감’이다. 최저임금 현실을 직시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은 정부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거나 뚜렷한 논거 없이 인상률을 정해왔다. 대선 운동 한복판인 4월 22일 1차 최임위가 시작

되어, 6월 10일 4차 전원회의까지 열렸다. 4차 회의까지 민주노총이 요구한 바는 명확하다.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올리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넓히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으로 법·제도 개선(고치자)이다.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공약이다. 모든 유권자에게 배달된 16쪽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목 아래 ‘사람·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형태의 자료든 공약 목록에 노동이 경제 속에 종속되어 있어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이라는 이름에 맞는 정책을 얼마나 펼칠지 의심스럽다.

윤석열이 망쳐놓은 노동정책 폐기와 더불어 현재도 벌어지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 권리 확보를 위한 무엇을 할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바로 파면 뒤 다시 만날 세상은 ‘차별과 배제, 빈곤 없는 사회’로의 대개혁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새 정부, 새 시대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요구를 받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2026년 최저임금은 11,500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3,500원·인상률 14.7%)이다. 6월 11일 오전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함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위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인상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2024년(2.5%), 2025년(1.7%) 최저임금은 결정 기준마저 무시한 채 낮은 인상이 이뤄진 점, 지출 항목의 50% 이상인 필수 생계비(식료품비·주거비·의료비)가 해마다 상승하는 점, 마이너스 성장(-0.98%)으로 얼어붙은 소비지출을 활성화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지난 5년(2021년~2025년) 간 이어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업범위 전면 확대(2024년~2025년)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하였다.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면서 여러 경제 상황까지 살핀 요구안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6월 8일 발표에 따르면 12·3 불법 비상계엄 뒤 이어진 국정 공백을 틈타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품목 74개 중 무려 53개(72%)가 올랐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을 크게 웃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래프). 고물가·실생활 물가 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은 노동자의 소비지출 억제로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최근 6개월 가공식품 물가상승 현황

2025년 5월 기준, 2024년 11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추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연합뉴스

자료: 통계청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20250608

악순환을 해결할 길을 열고 △노동자 생활 보장 △임금 격차 해소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린 인상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4위(2024년 기준) 경제 대국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임금마저 담보하지 못한다면 모든 이유를 떠나 낮부끄러운 일이지 않은가!

■ 특고·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일까? 사용자일까? 사전 정의로 봐도 당연히 노동자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006년 12월 대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관련,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학습지 교사를, 10월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였다. 그해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실기강사·학원서플라이·아이돌보미·화물트럭기사·백화점의류위탁판매원·영화제작진·제화노동자 등을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2024년 9월에도 노조법상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해외 사례로 보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은 이미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였고, 미국 뉴욕시는 2023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ILO(세계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

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91년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세계적 흐름과 현실이 이럼에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매년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판결까지 기나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최임위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용자측의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책임 의식을 갖고 적용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회가 노동부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해 심의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만큼 노동부와 최임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 적용 제외 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지난 2년 최임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측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 지역, 직종, 나이, 일하는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런 어불성설 주장에 2025년 최임위 공익위원이 부화뇌동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3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발언 뒤, 권순원 공익위원이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내 노동의 가치가 서울에서는 100%고 제주에서는 75%일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노동은 최저임금이어도 괜찮고 누구의 노동은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되는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도 최저임금법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다.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방문점점·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979~8,164원에 불과하다. 라이더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기본 배달료 인하 탓에 2년 전 3,000원 했던 최저 단가가 지금은 1,400원 수준으로 깎여 장시간 노동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선’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넘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임금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제도 취지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 업종 취업 회피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하락 △계급·계층, 지역 간 격차 증가 등의 후폭풍을 외면한, ‘기업 이익’이라는 한 측면만을 바라본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5월 29일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자영업자의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흔들지 말고, 본사·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마다 열리는 최임위에서 사용자측 논리는 뻔했다.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말 최저임금 때문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잠정)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1~3위는 △동종업종 경쟁 심화 △원재료비·재료매입비 △상권쇠퇴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동종업종 경쟁 심화는 9.5%p, 재료비는 2.5%p 증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진짜 어려움은 경기침체와 본사와의 유통구조 등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자료뿐만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자료에서도 자영업자 보릿고개의 주요한 원인은 △소비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부담(24.0%) △임차료·세금(12.3%)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잠정) 결과, 2025년 2월 발표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서조차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진짜 어려움은 아니었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을 불모 삼아 동결이니 삭감이니 따위의 억지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코로나, 불법 계엄 등으로 누적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원청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광장 의제가 이재명 정부 의제다

다시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 보자.

그날 국회 앞으로 달려온 노동자·시민이 없었다면, 추위와 폭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남태령으로 달려온 빛의 혁명가들이 없었다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 탄핵의 외침이 없었다면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역사에서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배제가 아닌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광장이 요구한 개혁 과제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최저임금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수준과 제도개선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광장 의제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지 가늠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에 앞서 연 민주노총 기자회견 발언 중 한 구절을 전한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투쟁의 한복판에서 민주노총을 만날 것인지,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살려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재명 정부에게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최저임금안 제출 기한은 6월 말이다. 투쟁!

최저임금 인상 ·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2025년 6월 28일 (토) 14시 서울